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 (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9년 12월 9일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9일

3. 제안이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함.

4. 주요골자

○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완화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여 감면토록 함.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5호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호이상의 주택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시행령('99.12.11·대통령령 제16,593호)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에서도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동법 개정에 따라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세수 감소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보전대책을 건의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